

### 3.1.18 학생상벌위원회규정

제정 2000. 04. 2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의 학생생활에 관한 상벌방침을 심의 수정하기 위한 학생상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본 위원회는 학생복지처장, 교무처장, 해당 학부(과)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위원장 및 임무)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고,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
제4조(소집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복지처장이 제안하는 학생생활지도 방안 심의
2. 학생상벌에 관한 심의 및 재청

제6조(임원의 임기) 위원회의 당연직 임원은 그 직책에 따라 위원이 되고,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